

# 서울특별시 대안교육기관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의안 번호	1935 관 련
----------	-------------

제안연월일 : 2020년 12월 16일  
제안자 : 행정자치위원장

## 1. 수정이유

- 개정안의 취지를 반영하여 대안교육기관에 입학하는 학생의 입학준비금의 근거를 마련하고, 대안교육기관 자문위원회의 구성과 심의의 공정성을 강화하고자 함.

## 2. 주요내용

- 대안교육 기관의 입학생에게 입학준비금 지원을 위한 근거를 마련함(안 제7조제1호).
- 대안교육기관 자문위원회 위원 중 지원센터의 장을 제외하고, 서울특별시 청소년정책과장, 서울특별시교육청 대안교육 관련 부서장을 포함함(안 제8조제4항)
- 서울특별시 대안교육기관 자문위원회 위원의 제척, 기피, 회피 규정을 신설함(안 제8조제9항부터 제11항).

# 서울특별시 대안교육기관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서울특별시 대안교육기관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안 제7조제1호 중 “급식비 등”을 “급식비, 입학준비금 등”으로 한다.

안 제8조제4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④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 또는 임명하며, 위원회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1. 대안교육기관의 재학생과 학부모
2. 대안교육기관의 장
3. 서울특별시 청소년정책과장
4. 서울특별시교육청 대안교육 관련 부서장
5. 서울특별시의회 소관 상임위원회 위원
6. 대안교육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는 사람

안 제8조제9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⑨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회의 심의에서 제척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자가 해당 사안에 관하여 당사자 이거나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사안의 신청인과 친족 관계에 있거나 있었던 경우
3. 위촉위원이 해당 사안에 관하여 증언, 감정, 법률자문, 손해사정이나 용역을 수행하였거나 관여한 경우
4. 위촉위원이 되기 전에 해당 사안에 대하여 용역·법률자문 또는 감정에 관여한 경우
5. 위촉위원이 해당 사안에 관하여 신청인의 대리인으로 관여하거나 관여 하였던 경우

안 제8조제10항을 제12항으로 하고, 제8조제10항과 제11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⑩ 위원회 심의의 이해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장에게 기피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⑪ 위원 본인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 서울특별시 대안교육기관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 〈 신·구 조문대비표 〉

현행	개정안	수정안
<p>제7조(대안교육기관 지원) (생략)</p> <p>1. 대안교육기관 교사 인건비, 교육프로그램 개발비, 재학생 급식비 등 필요한 비용</p>	<p>제7조(대안교육기관 지원) (현행과 같음)</p> <p>1. 대안교육기관 교사 인건비, 교육프로그램 개발비, 재학생 <u>급식비</u> 등 필요한 비용</p>	<p>제7조(대안교육기관 지원) (개정안과 같음)</p> <p>1. 대안교육기관 교사 인건비, 교육프로그램 개발비, 재학생 <u>급식비, 입학준비금</u> 등 필요한 비용</p>
<p>제8조(대안교육기관 자문위원회의 설치) ① 시장은 대안교육기관에 대한 지원시책을 심의·자문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대안교육기관 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고 한다)를 둘 수 있다. 다만, 「<u>학교 밖 청소년 지원 조례</u>」 제5조 "<u>학교 밖 청소년 지원분과위원회</u>"와 <u>통합운영</u> 할 수 있다.</p> <p>② (생략)</p> <p>③ <u>그 밖에 위원회</u></p>	<p>제8조(대안교육기관 자문위원회의 설치) ① 시장은 대안교육기관에 대한 지원시책을 심의·자문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대안교육기관 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고 한다)를 <u>둔다.</u></p> <p>② (현행과 같음)</p> <p>③ <u>위원회는 위원장</u></p>	<p>제8조(대안교육기관 자문위원회의 설치) ① (개정안과 같음)</p> <p>② (개정안과 같음)</p> <p>③ (개정안과 같음)</p>

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 신 설 >

< 신 설 >

< 신 설 >

< 신 설 >

< 신 설 >

< 신 설 >

< 신 설 >

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④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 또는 임명하며, 위원회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1. 대안교육기관의 재학생과 학부모

2. 지원센터의 장

3. 대안교육기관의 장

< 신 설 >

< 신 설 >

4. 서울특별시의회 소관 상임위원회 위원

5. 서울시 평생교육 국장

6. 대안교육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시장이

④ (개정안과 같음)

1. 대안교육기관의 재학생과 학부모

< 삭 제 >

2. 대안교육기관의 장

3. 서울특별시 청소년 정책과장

4. 서울특별시교육청 대안교육 관련 부서장

5. 서울특별시의회 소관 상임위원회 위원

< 삭 제 >

6. 대안교육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시장

< 신 설 >

위촉하는 사람  
⑨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며, 간사는 서울시 대안교육 담당 부서의 장으로 한다.

< 신 설 >

이 위촉하는 사람  
⑨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회의 심의에서 제척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자가 해당 사안에 관하여 당사자이거나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 신 설 >

2. 위원이 해당 사안의 신청인과 친족 관계에 있거나 있었던 경우

< 신 설 >

3. 위촉위원이 해당 사안에 관하여 증언, 감정, 법률자문, 손해사정이나 용역을 수행하였거나 관여한 경우

< 신 설 >

4. 위촉위원이 되기 전에 해당 사안에 대하여 용역·법률자문 또는 감정에 관여한 경우

	<p>&lt; 신 설 &gt;</p>	<p>5. <u>위촉위원이 해당 사안에 관하여 신청인의 대리인으로 관여하거나 관여하였던 경우</u></p>
	<p>&lt; 신 설 &gt;</p>	<p>⑩ <u>위원회 심의의 이 해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장에게 기피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u></p>
	<p>&lt; 신 설 &gt;</p>	<p>⑪ <u>위원 본인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u></p>

## 서울특별시 조례 제 호

### 서울특별시 대안교육기관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대안교육기관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1호 중 “급식비 등”을 “급식비, 입학준비금 등”으로 한다.

제8조제1항 중 “둘 수 있다. 다만,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조례」 제5조 “학교 밖 청소년 지원분과위원회”와 통합운영 할 수 있다.” 를 “둔다.” 로 한다.

제8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③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제8조제4항부터 제12항까지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 또는 임명하며, 위원회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1. 대안교육기관의 재학생과 학부모
2. 대안교육기관의 장
3. 서울특별시 청소년정책과장
4. 서울특별시교육청 대안교육 관련 부서장
5. 서울특별시의회 소관 상임위원회 위원



6. 대안교육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는 사람

⑤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고,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⑥ 정기회의는 연 2회 개최하며,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에 소집한다.

⑦ 위원장은 회의를 개최할 경우에는 각 위원에게 회의 일시·장소·안전 등을 사전에 통지하여야 한다.

⑧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⑨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회의 심의에서 제척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자가 해당 사안에 관하여 당사자이거나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사안의 신청인과 친족 관계에 있거나 있었던 경우

3. 위촉위원이 해당 사안에 관하여 증언, 감정, 법률자문, 손해사정이나 용역을 수행하였거나 관여한 경우

4. 위촉위원이 되기 전에 해당 사안에 대하여 용역·법률자문 또는 감정에 관여한 경우

5. 위촉위원이 해당 사안에 관하여 신청인의 대리인으로 관여하거나 관여하였던 경우

⑩ 위원회 심의의 이해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특별

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장에게 기피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⑪ 위원 본인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⑫ 위원회 회의에 출석하는 위원에게는 「서울특별시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0조제4항 중 “분기별로 시 및 지원센터에 통일된 정산보고서에 의거하여”를 “반기별로”로 한다.

# 서울특별시 대안교육기관 지원 조례

##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 < 신·구 조문대비표 >

현행	개정안
<p>제7조(대안교육기관 지원) 시장은 제 6조에 따라 신고한 대안교육기관 이 신청하는 경우에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신청에 관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p> <p>1. 대안교육기관 교사 인건비, 교육프로그램 개발비, 재학생 <u>급식비</u> 등 필요한 비용</p> <p>2. 그 밖에 대안교육기관과 관련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p>	<p>제7조(대안교육기관 지원) 시장은 제 6조에 따라 신고한 대안교육기관 이 신청하는 경우에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신청에 관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p> <p>1. 대안교육기관 교사 인건비, 교육프로그램 개발비, 재학생 <u>급식비, 입학준비금</u> 등 필요한 비용</p> <p>2. (현행과 같음)</p>
<p>제8조(대안교육기관 자문위원회의 설치) ① 시장은 대안교육기관에 대한 지원시책을 심의·자문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대안교육기관 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고 한다)를 <u>둘 수 있다. 다만,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조례」 제5조 “학교 밖 청소년 지원분과위원회”와 통합운영 할 수 있다.</u></p> <p>② (생략)</p>	<p>제8조(대안교육기관 자문위원회의 설치) ① 시장은 대안교육기관에 대한 지원시책을 심의·자문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대안교육기관 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고 한다)를 <u>둔다.</u></p> <p>② (현행과 같음)</p>

③ 그 밖에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 신 설 >

< 신 설 >

< 신 설 >

< 신 설 >

< 신 설 >

< 신 설 >

< 신 설 >

< 신 설 >

< 신 설 >

③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④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 또는 임명하며, 위원회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1. 대안교육기관의 재학생과 학부모

2. 대안교육기관의 장

3. 서울특별시 청소년정책과장

4. 서울특별시교육청 대안교육 관련 부서장

5. 서울특별시의회 소관 상임위원회 위원

6. 대안교육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는 사람

⑤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고,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⑥ 정기회의는 연 2회 개최하며,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에 소집한다.

< 신 설 >

⑦ 위원장은 회의를 개최할 경우에는 각 위원에게 회의 일시·장소·안건 등을 사전에 통지하여야 한다.

< 신 설 >

⑧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신 설 >

⑨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회의 심의에서 제척된다.

< 신 설 >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자가 해당 사안에 관하여 당사자이거나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 신 설 >

2. 위원이 해당 사안의 신청인과 친족 관계에 있거나 있었던 경우

< 신 설 >

3. 위촉위원이 해당 사안에 관하여 증언, 감정, 법률자문, 손해사정이나 용역을 수행하였거나 관여한 경우

< 신 설 >

4. 위촉위원이 되기 전에 해당 사안에 대하여 용역·법률자문 또는 감정에 관여한 경우

< 신 설 >

5. 위촉위원이 해당 사안에 관하여 신청인의 대리인으로 관여하거나 관여하였던 경우

< 신 설 >

⑩ 위원회 심의의 이해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장에게 기피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 신 설 >

⑪ 위원 본인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 신 설 >

⑫ 위원회 회의에 출석하는 위원에게는 「서울특별시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0조(회계투명성) ① (생략)

② (생략)

③ (생략)

④ 대안교육기관은 분기별로 시 및 지원센터에 통일된 정산보고서에 의거하여 정산서를 제출해야 한다.

제10조(회계투명성) ① (현행과 같음)

② (현행과 같음)

③ (현행과 같음)

④ 대안교육기관은 반기별로 정산서를 제출해야 한다.